

「2024년 2~3분기」

재난안전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

2024. 8. 30.(금)

재난안전실

보고 안건

(단위: 천원)

연번	예비비 사용건	소관부서	사용액
계			2,381,364
1	'부당이득금 반환소송'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 (장위7구역)	도로계획과	2,069,419
2	'부당이득금 반환소송'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 (하나은행)	도로계획과	311,946

'부당이득금 반환소송'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

'24. 08. 30.(금) | 도로계획과장 : 오대중 ☎2133-8060 팀장 : 최영무 ☎8091 담당 : 강지연 ☎8093

「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제출 승인에 관한 조례」 제3조(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) 제3항에 따라 24년 2~3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립니다

□ '24.2~3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: 2건, 23억 8천 1백만원

○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① : 부당이득금 2,069백만원 집행

【 소송 개요 】

- ◆ 사 건 명 :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38727 부당이득금
- ◆ 당 사 자 : (원고) 장위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
(피고) 서울특별시
- ◆ 사건토지 : 성북구 장위동 183-2 외 3필지(도로, 735㎡)
- ◆ 청구원인 : 서울시가 원고에게 사건토지를 법률의 근거 없이 유상매각하였기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
- ◆ 판결결과 : 화해권고결정('24.3.8.)
- ◆ 판결사유 : 사건토지는 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65조 제2항에 따라 무상양도 대상인 정비기반시설(도로)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해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함

- 사업시행자인 원고는 '장위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' 구역에 포함되어 2017년 매각된 시유지[장위동 183-2 외 3필지(도로, 735㎡)]가 관계법령상 무상양도 대상이므로 서울시에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함.
- 사건토지는 구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 제6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무상양도 대상인 정비기반시설임이 인정되므로 매매대금 원금을 지급하라는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짐.
- 판결금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(연12%) 등 불필요한 재정 손실을 막기 위해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아 2,069백만원을 원고에게 신속히 지급함.

(단위: 원)

부 서	세부사업명	통계목	지출액	지출일
	계		2,069,418,780	
도로계획과	유상매각 부당이득금 반환소송	배상금 등 (305)	2,069,418,780	'24. 5. 9.

○ **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② : 부당이득금 311백만원 집행**

【 소송 개요 】

- ◆ 사 건 명 :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37123 부당이득금
- ◆ 당 사 자 : (원고) 주식회사 하나은행
(피고) 서울특별시
- ◆ 사건토지 : 강북구 미아동 3-467 외 2필지(도로, 2,658㎡)
- ◆ 청구원인 : 서울시가 원고 소유의 토지를 아무런 보상없이 무단으로 도로로 개설·사용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(사용료)을 청구
- ◆ 판결결과 : 패소('24.6.19. 원고일부승)
- ◆ 판결사유 : 서울시가 사건토지를 점유 및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배타적 사용·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음에 따라 사건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함

- 재판부는 강북구 미아동 3-467 외 2필지 2,658㎡ 중 1,669㎡에 대해 서울시가 보상 없이 시도(오현길 및 월계로)로 사건 토지를 편입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토지 소유자인 원고의 부당이득금 청구를 인용하였음.
- 판결금 지급 지연에 대한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아 312백만원(원금 279, 이자 33)을 원고에게 신속히 지급함.

(단위: 원)

부 서	세부사업명	통계목	지출액	지출일
계			311,945,610	
도로계획과	부당이득금 반환소송	배상금 등 (305)	311,945,610	'24. 8. 1.